제천시 공고 제2025-910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건축법」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됨을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5년 04월 22일

제 천 시 장

1. 공고내용 : 건축물 장기 미착수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알림
2. 법적근거 : 건축법 제11조 제7항, 행정절차법 제21조
3. 공고대상자(송달내용)

허가번호	건축주	대지위치	허가일	주용도	비고
2001-도시건축과-신축허가-85	김 * 봉	금성면 구룡리 466-77	2001.02.05.	단독주택 (다가구주택)	취소 예정

4. 공고기간 : 2025. 04. 22. ~ 2025. 05. 08.
5. 공고방법 :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
6. 기타사항
   - 상기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공고 기간 이후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됨을 알려드리며,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 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리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알려드립니다.

※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천시청 신속허가과(☎ 043-641-629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